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714호 2019. 9. 4(수)



선	기관의 장
결	

## 고 시

- 제2019-103호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양평생활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3
- 제2019-104호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종점연장) 고시 ..... 5
- 제2019-105호 도로명주소 고시 ..... 7

## 공 고

- 제2019-1093호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 제2019-1111호 군도4호선(병곡~산수)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 25
- 제2019-1112호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공고 ..... 32
- 제2019-1113호 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 43
- 제2019-1114호 (주)삼덕개발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47
- 제2019-1117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 48
-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16호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9
-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17호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56
-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18호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66

회 랑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양평생활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스포츠파크 다중이용시설 증축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양평생활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19년 09월 05일**

### 거창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3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양평생활체육시설)사업
  - 명칭 : 스포츠파크 다중이용시설 증축사업
3. 사업면적 및 규모
  - 1) 사업규모

종 류	위 치	사업규모(㎡)				최 초 결정일	비 고
		결정 면적	금회시행				
			대지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육시설 (양평생활체육시설)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342번지 일원	29,099	173	당초1,463.60	당초1,460.22	경고 제2011-96호 (2011.12.13.)	
				변경1,554.65	변경1,534.49		
				증91.05	증74.27		

2) 세부시설 조서

구 분		세부시설 결정면적 (㎡)	금회시행 면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29,099	173	100.0	
체 육 시설	소 계	8,211	-	28.2	
	진천후 게이트볼장	1,385	-	4.8	
	게이트볼장	2,313	-	7.9	
	배드민턴장	636	-	2.2	
	테니스장	3,749	-	12.9	
	씨름장	128	-	0.4	
편 익 시설	소 계	2,907	-	10.0	
	휴게시설	173	173	0.6	철거 66.28㎡, 증축140.55㎡
	파고라	97	-	0.3	
	주차장	2,591	-	8.9	
	화장실	46	-	0.2	

기반시설	소 계	17,981	-	61.8	
	다목적광장	3,637	-	12.5	
	진입광장	672	-	2.3	
	보행자도로	369	-	1.3	
	녹지	13,303	-	45.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명 : 거창군수(체육시설사업소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19.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29,099	173					
1	거창읍 양평리	342	체	22,917	173		거창군			
2	거창읍 양평리	1184	체	5,981	-		거창군			
3	거창읍 양평리	1184-3	체	201	-		거창군			

#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종점연장)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와 제11조의 4, 제21조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4.

## 거 창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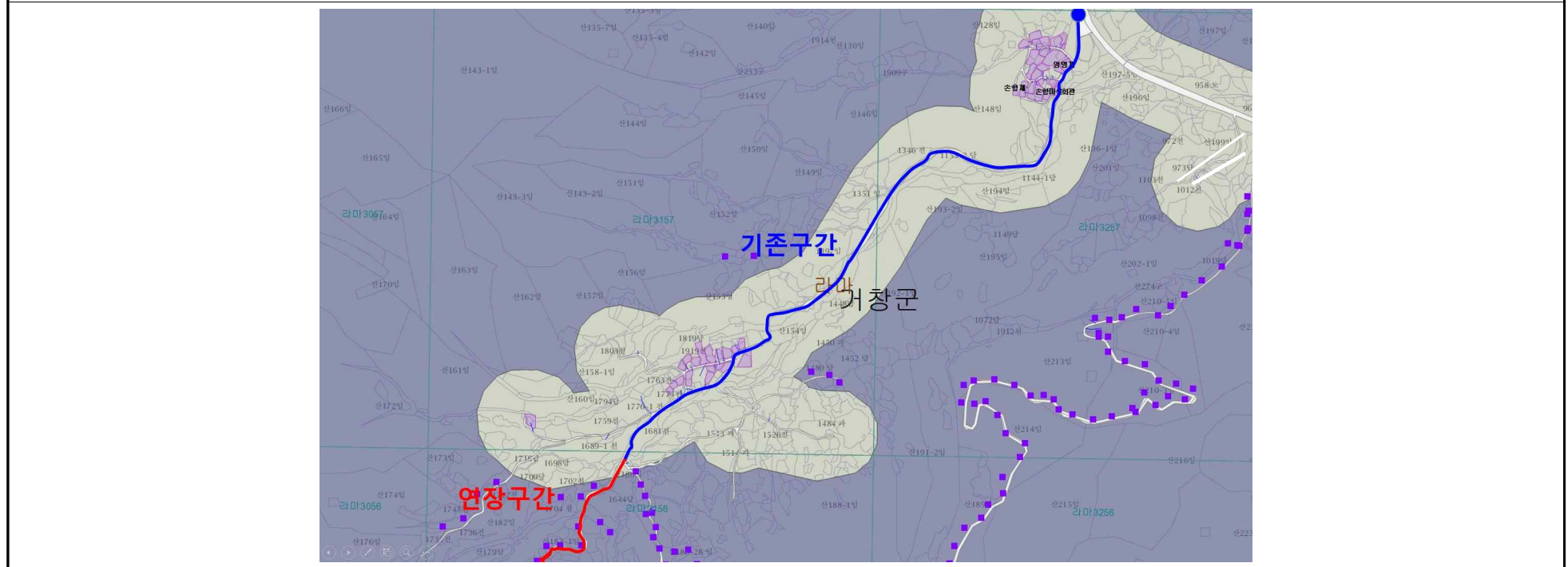
1. 고 시 일: 2019. 9. 4.
2. 고시방법: 거창군 공보와 홈페이지, 게시판
3. 도로명(도로구간) 고시 내용: 붙임 참조(조서)
4. 변경사유: 고제면 온곡길 주도로구간 종점연장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 (☎ 055-940- 33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변경(종점연장) 조서와 현황도 1부. 끝.

## 도로구간 변경(종점연장) 조서와 현황도

순번	구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k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유사 도로명 및 동일 도로명	변경사유	관 할 행정구역
			시점	종점				시작	끝			
1	변경 전	은곡길	고제면 농산리 1905	고제면 농산리 1646	1.68	4	10	1	336	-	주도로구간 종점 연장	고제면
	변경 후	은곡길	고제면 농산리 1905	고제면 농산리 산183-1	2.04	4	10	1	408			

### 현 황 도 면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항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의 종점만을 변경(종점연장)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과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4.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23 등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67-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23	2009-07-02	2019-09-04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면) 활용	
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9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1236-106	2009-12-28	2019-09-04	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44, 2043-8, 2044-3, 2044-4, 2045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119	2009-12-28	2019-09-04	고제면에 위치한 빼재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1063-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신1길 107	2009-12-28	2019-09-04	고학의 새로생긴 마을이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386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내촌길 94-14	2009-04-01	2019-09-04	소학 내척편의 예의범절을 배우는것이 사람되는 근본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6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632-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온곡길 378	2009-04-01	2019-09-04	겨울에도 따뜻하고 아늑하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거창군 공고 제2019-1093호

##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2. 개정이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천적곤충 생산·공급에 따른 근거 마련 및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천적곤충 생산 및 공급 내용 신설(안 제6조)

나.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안 제9조)

4.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8. 28. ~ 2019. 9. 18.(21일간)

##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47)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과

- 전화번호 : 055)940-8202, FAX : 055)940-817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거창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유기농산물이거나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2.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4.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생산단지 조성
6.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
2.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
3.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자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소요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친환경농업 실적 및 현황
2.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실적
3.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
5. 그 밖에 군수가 제3조 각 호의 사업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천적곤충의 생산 및 공급)**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천적곤충(「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천적곤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하고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천적곤충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2.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농업환경 개선)** 군수는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의 오염 방지 및 개발
3. 토양검정(土壤檢定: 거름양·방법 개선 및 토양개량을 위해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것)
4. 그 밖에 군수가 토양 개량 및 수질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군수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군 실천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
2.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이행
4.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농자재 등의 도입 및 홍보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7. 천적곤충의 공급가격 결정
8.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9.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 행복농촌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나. 농업 관련 관계 기관·단체의 대표자
  - 다. 친환경농업 관련 관계기관·단체의 대표자
  - 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3항제2호라목의 위원: 2년

2. 제1호 외의 위촉위원: 그 직에 있는 기간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1.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기농수산물
  -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육성·지원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등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실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자치구 실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

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 제4장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⑤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제35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

산물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갱신·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14. 3. 24.>

**제36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무농약농수산물등에 직접 또는 그 포장등에 무농약, 무항생제(축산물 또는 수산물만 해당한다), 활성처리제 비사용(해조류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푼말에 표시할 수 있다.

②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그 밖에 표시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로 본다. <개정 2016. 12. 2.>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어업 환경의 유지·개선 실적
2.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실적
3.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
4.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보급 실적
5.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실적
6.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7.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및 유기임산물(이하 "유기농축산물"이라 한다)
  - 나.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이하 "무농약농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식품등"이란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며, 유기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4.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① 삭제 <2015. 8. 1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약용곤충 및 학습·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 ③ 삭제 <2015. 8. 11.>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2. 11.>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2. 11.>
-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 1. 장수풍뎅이

- 가. 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
- 나. 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
- 다. 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

- 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규격 제한 없음. 다만,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곤충의 종류와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2.11.>

####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종류	
1. 천적 곤충	가. 노린재류	담배장님노린재, 미끌애꽃노린재, 참딱부리긴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나. 풀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어리줄풀잠자리, 갈고리뱀잠자리붙이
	다. 딱정벌레류	갈색반날개, 민깨알반날개, 꼬마무당벌레,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무당벌레, 깍지무당벌레
	라. 파리류	진디혹파리, 응애잠이혹파리, 호리꽃등에

	마. 기생벌류	명충알벌, 쌀좀알벌, 검정알벌, 어비진디벌, 콜레마니진디벌, 짜리진디벌, 복숭아혹진디벌, 진디면충좀벌, 굴파리좀벌, 온실가루이좀벌, 황온좀벌, 담배가루이좀벌, 알깡충좀벌, 배노랑금좀벌, 잎굴파리고치벌, 배추나비고치벌, 예쁜가는배고치벌, 프루텔고치벌, 개미침벌
	바. 응애류	긴털이리응애, 가는빨다리좀응애, 마일스응애, 사막이리응애, 칠레이리응애, 지중해이리응애, 오이이리응애, 팔라시스이리응애, 나팔이리응애
	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2. 화분매개곤충	서양뒤영벌, 토종 뒤영벌류( <i>Bombus</i> spp.), 서양종꿀벌, 동양종꿀벌, 가위벌과( <i>Megachilidae</i> spp.), 연두금파리, 검정뺨금파리, 배짧은꽃등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3. 환경정화곤충	아메리카동애등에, 빨소똥구리, 집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4. 식용곤충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곤충과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된 곤충	
5. 약용곤충	말벌과( <i>Vespidae</i> spp.), 땅강아지, 등에과( <i>Tabanidae</i> spp.), 가뢰과( <i>Meloidae</i> spp.), 누에나방(백강잠, 잠사), 사마귀과( <i>Mantidae</i> spp.), 매미과( <i>Cicadidae</i> spp.), 굼벵이류( <i>Holotrichia</i> spp.), 왕지네, 그 밖에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토종 곤충(지벌충과 전갈은 제외한다)	
6. 학습·애완곤충	가. 잠자리목	왕잠자리, 어리부채장수잠자리, 어리장수잠자리
	나. 사마귀과	넓적배사마귀, 왕사마귀, 사마귀, 좀사마귀
	다. 대벌레류	대벌레, 긴수염대벌레
	라. 메뚜기류	우리벼메뚜기, 풀무치, 방아깨비, 섬서구메뚜기
	마. 여치류	여치, 긴날개여치
	바. 귀뚜라미과	왕귀뚜라미, 쌍별귀뚜라미, 방울벌레
	사. 수서노린재류	장구애비, 게아재비, 물자라류, 소금쟁이류
	아. 뱀잠자리과	뱀잠자리류 유충
	자. 수서딱정벌레류	물방개류, 물땡땡이, 애물땡땡이, 물매미
	차. 딱정벌레과	땃쟁이딱정벌레, 홍단딱정벌레, 우리딱정벌레
	카. 사슴벌레류	사슴벌레류
	타. 장수풍뎅이과	외뿔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파. 꽃무지과	사슴풍뎡이, 점박이꽃무지류, 긴다리호랑꽃무지, 꽃무지
하. 반딧불과	반딧불과 전종
거. 거저리과	아메리카왕거저리, 갈색거저리
너. 하늘소류	툽하늘소, 버들하늘소, 검정하늘소, 하늘소, 청줄하늘소, 루리하늘소, 모자주홍하늘소, 초록사향하늘소, 벗나무사향하늘소, 홍가슴폴색하늘소, 호랑하늘소, 목하늘소, 후박나무하늘소, 솔수염하늘소, 알락하늘소, 큰우단하늘소, 화살하늘소, 울도하늘소, 뽕나무하늘소, 참나무하늘소, 알락수염하늘소, 팔점긴하늘소
더. 나비류	배추흰나비, 큰줄흰나비, 남방노랑나비, 꼬주명주나비, 호랑나비, 제비나비류, 암끝검은표범나비, 왕나비류
러. 개미류	일본왕개미, 홍가슴개미
머. 거미류	황닷거미, 별농발거미, 먹닷거미
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7. 사료 용 곤 충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곤충으로 갈색거저리, 아메리카왕거저리, 아메리카동애등애, 집파리, 쌍별귀뚜라미, 왕귀뚜라미, 누에나방, 깔다구과 유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8. 그 밖 의 용 도 곤 충	오배자면충, 구리금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 군도4호선(병곡~산수)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거창군에서 시행중인 『군도4호선(병곡~산수)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편입 토지 및 지장물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의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4일

거창군수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군도4호선(병곡~산수) 확포장공사
- 나. 위치 :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산수리 일원
- 다. 사업량 : 도로확포장 L=3,088m B=12m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지 :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 산수리 일원
- 나. 물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2, 3557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 6.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건물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주 소	성 명	
계		227 필지				55,195						
1	병곡리	1215-2		도	141	11		국(건설부)				
2	병곡리	768-1	768-6	대	253	32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768-1	김재철				
3	병곡리	768-2	768-7	도	288	265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김상근				
4	병곡리	768-4	768-9	학	4,946	293		거창군				
5	병곡리	780		전	627	627	거창군 북상면 병곡길 457-2	천석권				
6	병곡리	768-3	768-8	답	562	243		거창군				
7	병곡리	767-3		대	3	3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김만수				
8	병곡리	790-3		전	83	83		거창군				
9	병곡리	781-1		잡	857	857		거창군				
10	병곡리	781-3		도	287	161		거창군				
11	병곡리	1215		도	2,023	194		국(건설부)				
12	병곡리	785	785-2	전	411	229		거창군				
13	병곡리	786	768-3	전	248	165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803	강두영				
14	병곡리	847	847-3	답	175	31		거창군				
15	병곡리	968-15	968-31	답	1,246	186		거창군				
16	병곡리	968-14	968-30	답	671	249		거창군				
17	병곡리	968-13	968-29	답	482	316		거창군				
18	병곡리	1086-7		구	220	25		국(농림수산부)				
19	병곡리	968-10	968-28	답	1,573	688	부산 수영구 수영동 251-4 선호빌라 201호	김상환				
20	병곡리	1086-4		구	276	22		국(농림수산부)				
21	병곡리	968-7	968-27	답	1,220	15	대구시 달성군 농공읍 남리 573-2 병광현대아파트 501동 102호	김철수				
22	병곡리	968-6	968-26	답	1,197	111		거창군				
23	병곡리	968-5	968-25	답	1,611	249		거창군				
24	병곡리	968-4		답	752	752		거창군				
25	병곡리	1006-2		임	210	210		거창군				
26	병곡리	1006		임	258	258		거창군				
27	병곡리	968-1	968-23	답	299	16		거창군				
28	병곡리	1010		답	8	8		김영식				
29	병곡리	968-20		도	182	182		거창군				
30	병곡리	1011-1		도	67	67		거창군				
31	병곡리	767-2	767-8	도	198	102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김만수				
32	병곡리	790-2	790-6	도	162	124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정태군				
33	병곡리	781-2		도	43	43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이원희				
34	병곡리	786-2	786-4	전	404	49		거창군				
35	병곡리	838	838-1	전	2,084	33		거창군				
36	병곡리	839	839-2	임	1,547	415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487	조정희				
37	병곡리	845-4		임	234	234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김영권				
38	병곡리	840	840-4	전	1,060	181		거창군				
39	병곡리	840	840-5	전	1,060	125		거창군				
40	병곡리	840-3		전	103	103		거창군				
41	병곡리	845-2		도	2,512	1,393		거창군				
42	병곡리	845-3		임	169	169		거창군				
43	병곡리	888-2		도	98	34		거창군				
44	병곡리	1212		구	338	47		국(농림수산부)				
45	병곡리	1086-6		도	98	38		국(농림수산부)				
46	병곡리	875-2		도	50	50		거창군				
47	병곡리	885-1		도	989	707		거창군				
48	병곡리	875-1		도	48	48		거창군				
49	병곡리	1210-2		구	175	140		국(농림수산부)				
50	병곡리	877-3		도	85	85		거창군				
51	병곡리	881-1		도	508	423		거창군				
52	병곡리	878-2		도	17	17		거창군				
53	병곡리	878-1		도	122	122		거창군				
54	병곡리	879-1		도	12	12		거창군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주 소	성 명
55	병곡리	1006-1		도	381	381		거창군			
56	병곡리	1213		도	1,765	110		국(건설부)			
57	병곡리	1009-1		도	140	61		거창군			
58	병곡리	968-21		도	12	12		거창군			
59	병곡리	1007-2		도	25	6		거창군			
60	병곡리	968-2	968-24	답	738	21	거창군 북상면 병곡길 452	김재철			
61	병곡리	1007-1		도	50	50		거창군			
62	병곡리	1007	1007-3	임	199	20		거창군			
63	병곡리	산 16-1		도	1,087	695		거창군			
64	병곡리	1017-1		도	36	36		거창군			
65	병곡리	1016-1		도	165	165		거창군			
66	병곡리	산 16-2	산 16-13 산 16-14	임	4,509	31 57		거창군			
67	병곡리	1014-1		도	133	133		거창군			
68	병곡리	산 16-6		도	160	160		거창군			
69	병곡리	1032	1032-4	창	442	10		거창군			
70	병곡리	1034-2	1034-10	전	958	201		거창군			
71	병곡리	1034-6		도	1,633	1,246		거창군			
72	병곡리	1040-2		도	17	17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이재팔			
73	병곡리	1041	1041-3	전	1,572	328		거창군			
74	병곡리	1039-2		전	42	42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정수억			
74	병곡리	1046-2		전	267	267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김희성			
75	병곡리	1048-3		도	31	31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880	김용석			
76	병곡리	1048-1	1048-6	전	1,903	300		거창군			
78	병곡리	산 18-2		임	445	445		거창군			
79	병곡리	1048-5	1048-7	전	302	211		거창군			
80	병곡리	1056	1056-1	전	1,117	317		거창군			
81	병곡리	산 21	산 21-12	임	11,355	316		거창군			
82	병곡리	1060-4	1060-7	전	2,303	425		거창군			
83	병곡리	산 22-3	산 22-7	임	14,929	169		거창군			
84	병곡리	산 22-3	산 22-8	임	14,929	431		거창군			
85	병곡리	산 22-2	산 22-6	도	1,703	1,703		거창군			
86	병곡리	산 32	산 32-5	임	48,760	237		거창군			
87	병곡리	산 32-4	산 32-6	임	130	41		거창군			
88	병곡리	1069-2		임	134	134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김문옥			
89	병곡리	산 22-5		임	184	57	경기도 화성시 능동 1151 동탄푸른마을 모아미래도아파트 943동 607호	김태안 등 2인			
90	병곡리	산 23-2		임	22,491	742		거창군			
91	병곡리	산 24-1		도	586	586		국(국토해양부)			
92	병곡리	산 24		임	3,576	131		국(산림청)			
93	병곡리	산 16-8		도	299	29		거창군			
94	병곡리	산 16	산 16-9	임	1,970	238		거창군			
95	병곡리	1017	1017-2	임	496	136		거창군			
96	병곡리	산 16-3	산 16-10	임	1,453	155		거창군			
97	병곡리	1016		임	1,656	200		거창군			
98	병곡리	산 16-4	산 16-11	임	2,226	217		거창군			
99	병곡리	1014	1014-2	임	479	117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정태성			
100	병곡리	산 16-5	산 16-12	임	630	138	엠 2 피 2 에이치 2 캐나다 온타리오 노스요크 더 805 윌리엄카슨 크레스 38	서화선			
101	병곡리	1032-2		임	37	37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김병선			
102	병곡리	1033	1033-1	임	744	95	경기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0 탑마을 508동 102호	서화선			
103	병곡리	1034-1	1034-9	전	889	105		거창군			
104	병곡리	1034-7		전	33	33		거창군			
105	병곡리	1039	1039-3	전	356	23		거창군			
106	병곡리	1046		전	65	65		거창군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주 소	성 명
107	병곡리	산 18-1		도	423	316		거창군			
108	병곡리	1048-4		도	137	137		거창군			
109	병곡리	산 19-1		도	50	50		거창군			
110	병곡리	산 19-2	산 19-3	임	216	184	대구 서구 평리동 1189-29	정광순			
111	병곡리	1057-1		도	222	154		거창군			
112	병곡리	1057-2		전	201	201	경남 진주시 하대동 101 현대아파트 101 동 1803 호	이한생			
113	병곡리	산 20-1		도	402	172		거창군			
114	병곡리	산 20-2	산 20-3	임	1,098	603		거창군			
115	병곡리	산 21-2	산 21-13	임	4,715	63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800	이성열			
116	병곡리	산 21-1		도	543	425		거창군			
117	병곡리	1060-3		도	439	192		거창군			
118	병곡리	1060-6		임	112	112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신종익			
119	병곡리	산 22		임	96,160	298		거창군			
120	병곡리	1069-1		도	352	352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김문옥			
121	병곡리	산 32-3		도	343	343		거창군			
122	병곡리	산 22-4		도	536	536		거창군			
123	병곡리	산 23-1		도	418	418		거창군			
124	병곡리	산 24-2		임	1,063	172		국(산림청)			
125	병곡리	산 25-1		도	92	76		국(국토해양부)			
126	병곡리	1225		도	432	129		국(건설부)			
127	병곡리	1139-1		도	286	286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우대원			
128	병곡리	1143-1		도	28	28	대구부 서하정 29	이상근			
129	병곡리	산 28-1		도	2,682	2,682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627	김용범			
130	병곡리	산 28		임	16,777	1,140		거창군			
131	병곡리	1174-2	1174-6	답	2,411	54		거창군			
132	병곡리	1174-2	1174-7	답	2,411	626		거창군			
133	병곡리	산 28-4	산 28-5	임	374	153		거창군			
134	병곡리	1174-1	1174-5	답	410	51		거창군			
135	병곡리	1174-4		도	144	144		거창군			
136	병곡리	산 23	산 23-4	임	232,243	111		거창군			
137	병곡리	산 23	산 23-5	임	232,243	684		거창군			
138	병곡리	산 23	산 23-6	임	232,243	590		거창군			
139	병곡리	1084-1		도	14	14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최마지			
140	병곡리	1084		임	366	64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최마지			
141	병곡리	산 23-3		도	2,402	1,823		거창군			
142	병곡리	1139	1139-2	전	471	25		거창군			
143	병곡리	산 28-2		임	1,103	108		거창군			
144	병곡리	산 28-3		임	386	386		거창군			
145	병곡리	1175	1175-2	전	2,436	39		거창군			
146	병곡리	1175-1		도	205	205		거창군			
147	병곡리	1225-4		도	602	602		국(건설부)			
148	병곡리	1182-1		도	111	111		거창군			
149	병곡리	1182	1182-2	전	2,838	371		거창군			
150	병곡리	1183-1		도	75	75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631	우봉출			
151	병곡리	1183	1183-2	전	193	50		거창군			
152	병곡리	1226		구	10,208	461		국(농림수산부)			
153	산수리	522-1		도	92	92		거창군			
154	산수리	523-1		도	91	91	농산리 36	김두환			
155	산수리	517	517-1	답	982	23		거창군			
156	산수리	519-2		도	79	79	함양군 서상면 중남리	배상현			
157	산수리	1438		구	780	35		국(농수산부)			
158	산수리	491	491-1	전	443	86		거창군			
159	산수리	492	492-1	전	698	156		거창군			
160	산수리	505	505-2	전	3,908	141		거창군			
161	산수리	476-1	476-7	전	792	47		거창군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주 소	성 명
162	산수리	476-2	476-8	답	3,911	255		거창군			
163	산수리	487		구	737	362		국(농수산부)			
164	산수리	1437		도	496	496		국(건설부)			
165	산수리	479	479-1	답	1,808	564		거창군			
166	산수리	490	490-2	전	660	221		거창군			
167	산수리	490-1		도	87	87		거창군			
168	산수리	493-1		도	74	74		거창군			
169	산수리	493	493-2	전	809	32		거창군			
170	산수리	480	480-1	답	861	52		거창군			
171	산수리	1441-1		도	1,610	1,570		국(건설부)			
172	산수리	497	497-3	전	1,437	57		거창군			
173	산수리	497-2		도	25	25		거창군			
174	산수리	497-1		도	75	21		거창군			
175	산수리	500-1		도	61	19		거창군			
176	산수리	500-2		도	20	20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수리			
177	산수리	500	500-3	임	157	47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수리			
178	산수리	449-1	449-4	답	1,403	443		거창군			
179	산수리	447-1	447-2	전	506	29		거창군			
180	산수리	1440		구	7,098	219		국(농수산부)			
181	산수리	451-1		도	62	62		김종복			
182	산수리	453-1		도	35	35		거창군			
183	산수리	436-1		도	138	138		거창군			
184	산수리	455-1		도	104	104		거창군			
185	산수리	432		도	324	324		장만보			
186	산수리	434-5		도	33	33		거창군			
187	산수리	430-1		도	215	215		김석구			
188	산수리	1442		도	4,866	1,538		국(건설부)			
189	산수리	664-2	664-4	전	740	568		거창군			
190	산수리	664-3		도	26	26		정복남			
191	산수리	665	665-1	전	962	343		거창군			
192	산수리	662	662-1	전	142	35		거창군			
193	산수리	661	661-1	임	311	43		거창군			
194	산수리	660	660-1	전	165	70		정복상			
195	산수리	659	659-2	전	269	77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김기노			
196	산수리	658	658-2	임	554	304		거창군			
197	산수리	654	654-1	답	413	155		거창군			
198	산수리	1449		천	119,383	990		국(건설부)			
199	산수리	685-1		전	1,012	1,012		거창군			
200	산수리	503-1		도	49	49		거창군			
201	산수리	503	503-2	묘	2,840	163		거창군			
202	산수리	501	501-1	전	3,160	154		거창군			
203	산수리	1441		도	169	169		국(건설부)			
204	산수리	산 4	산 4-8	임	153,021	88		거창군			
205	산수리	산 4-1		도	268	268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568	신경범 등 3인			
206	산수리	449-2		도	13	13		김정룡			
207	산수리	449-3		도	71	71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583	정오균			
208	산수리	451	451-2	전	305	145		거창군			
209	산수리	453	453-3	전	108	36		거창군			
210	산수리	453-2		도	85	20		거창군			
211	산수리	436	436-2	전	900	229		거창군			
212	산수리	435	435-2	전	218	127		거창군			
213	산수리	435-1		도	73	73		거창군			
214	산수리	434-3		도	77	77		거창군			
215	산수리	433		도	159	159		장만보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주 소	성 명
216	산수리	434-4		도	51	51		거창군			
217	산수리	434-1	434-8	전	3,239	984		거창군			
218	산수리	434-6		도	35	35		거창군			
219	산수리	642-3		도	140	140		거창군			
220	산수리	642-1	642-4	전	1,420	517		거창군			
221	산수리	664-1		도	30	30		정북남			
222	산수리	663	663-1	묘	668	306		거창군			
223	산수리	651	651-1	전	1,441	361		거창군			
224	산수리	652	652-1	답	179	50		거창군			
225	산수리	1455		구	1,150	166		국(농수산부)			
226	산수리	653		답	126	126		거창군			
227	산수리	684		전	202	202		김시대			

##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공고

거창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마을홍보를 위한 청년 사무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9월 3일  
거창군수

###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 근무지 : 북상면 빙기실농어촌체험휴양마을
- 채용인원 : 1명
- 채용기간 : 2019년 9월 11일 ~ 계약만료시까지

### 2. 담당업무

- 마을체험 프로그램개발 운영활동 지도
- 마을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 회계·고객관리, 마을사무 관리, 주민교육

###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자격요건,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과 경력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검정

### 4. 채용자격 기준

- 현재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체험마을사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고 상근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거주지제한 : 접수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9. 3.(월) ~ 2019. 9. 9.(월) / 7일간
- 접수처
  - 접 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
  - 접수방법 : 응시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
- ① 방문접수 : 농업기술센터 1층 귀농귀촌담당으로 제출 / 9. 9.(월) 18시까지
- ② 이메일접수 : te256@korea.kr / 9. 9.(월) 18시까지

##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후 면접대상 통보 : 2019. 9. 9.(월)/개별 통보
- 면접시험일시, 장소 : 2019. 9. 10.(화) 14:00 거창군농업기술센터

## 7. 제출서류

- 채용지원사업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각 1부 / 붙임 서식
- 사진 2매 : 지원서 제출전 6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를 응시원서에 붙임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등 각 1부
- 자기소개서 각 1부(A4용지 2매 분량 이내 - 붙임서식)
- 자격증, 수료증,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 경력증명서(근무지별) 각 1부

## 8.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 결정자가 합격등록 포기시는 차 순위 자로 합격결정
- 보 수 : 월 2,000천원 정도
  - 단 식사, 후생복지,보험 등 마을과 협의 결정
- 기타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담당(055-940-816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②채용희망마을	
③추진목표	
④직무수행계획	
⑤담당업무(분야) / 주요내용	

이상과 같이 2019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작성요령

-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 마을명을 기재
- ③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 ⑤ 담당업무(분야) / 주요내용 : 사무장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 ⑥ 직무수행계획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  
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 자 기 소 개 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내 용

2019. .

작성자 : ○ ○ ○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지원대상마을사업 선정(지원) 심사평가표(안)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 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li> <li>◦마을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li> <li>◦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역자원 활용 정도</li> <li>◦지역의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li> <li>◦마을참여농가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관리 현황</li> </ul>	
2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li> <li>◦마을의 발전가능성(기대효과)</li> </ul>	
3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리더·주민 등의 농촌체험관광 관련 교육 이수현황</li> </ul>	
4	사업추진의지 및 관심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리더·주민 등의 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적극성 등)</li> <li>◦마을의 참여조직의 구성·운영여부 및 농촌관광참여가구 비율</li> <li>◦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li> </ul>	
5	마을 홍보 실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보유 및 내용의 충실성</li> <li>◦마을홍보책자 등 자체 홍보물 보유 및 수준</li> <li>◦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li> <li>◦1사1촌 결연,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 노력</li> </ul>	
6	체험마을 운영성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 방문객수 및 증가율(전년대비)</li> <li>◦마을 재방문객수 및 재방문율(전년대비)</li> <li>◦마을 매출액 및 증가율(전년대비)</li> </ul>	
7	사무장 채용예산 지원 필요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장채용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li> </ul>	
8	가점(10), 감점(-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 마을법인 운영, 등급 전부문 1등급마을, 평가 우수·시상 경력 등</li> <li>* 감점 : 마을평가 미흡, 민원발생, 조성 10년차 이상 등</li> </ul>	
종합평가(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의견 :</li> </ul>	

※ ‘대상마을 요건’ 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4호 서식]

채용대상자 선정(지원) 심사평가표(안)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주요경력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경력내용(실적)</li> <li>◦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및 연계가능성</li> <li>◦담당(예정)업무에 대한 기여가능성</li> <li>◦담당(예정)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체험지도사 등) 및 교육이수현황(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 등)</li> </ul>	
2	직무수행계획의 적정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li> <li>◦직무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li> <li>◦마을발전에 대한 기여가능성(기대효과)</li> </ul>	
3	마을사무장으로서의 자질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li> <li>◦농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li> <li>◦채용희망마을에 대한 사전지식, 이해정도</li> <li>◦헌신성, 성실성, 추진력 등</li> </ul>	
4	가점(10), 감점(-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 유사경력 및 추가 관련 자격증 보유여부</li> <li>* 감점 : 타 마을사무장근무시 불량 평가시</li> </ul>	
종합평가(100)			◦평가의견 :	

※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5호 서식]

## 근로계약서(예시)

사용자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대표 ○○○(이하 ‘갑’이라 함)와 사무장 ○○○은(이하 ‘을’이라 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자는 본 계약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본 계약에 의한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본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I. 계약 당사자

사용자(갑)		근로자(을)	
사업자명	○○ 농촌체험휴양마을	성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		근로시작일	

### II. 근로조건

#### 제1조 [취업 장소 및 직무]

- 취업장소 : 빙기실농촌체험·휴양마을
  - 취업직무 :
  - 근무부서 :
  - 직 위 : 각 회사내 직위 명시\*
- \* 시원 대리, 과장, 팀장 등 각 회사내 실제 직위 반드시 명시

#### 제2조 [계약기간]

- ① 근로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기한이 없는 무기 근로계약자로 본다.
- ② 연봉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종료 전 한 달 이내에 재연봉계약을 맺는다.
- ③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 연봉계약기간이 지나도록 연봉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동일 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 휴가]

- ①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적용하며,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로 한다. 단,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서별/개인별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근무토록 한다.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13:00 ~ 14:00



② 제1항에 의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갑’은 ‘을’과 합의하여 실시하되, 갑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시간 외 근로 요청시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기타 국가법정공휴일, 하기휴가 등은 정상근무일이지만 개인별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한다.

**제4조 [임금]** 임금은 총 연봉으로 지급하며 구체적 내용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총연봉액 :                    원/년    ◆ 월급여 :                    원/월(A+B+C+D+E+F)

① 기본급 :                    원/월                    ② 연장근로수당 :                    원/월

③ 야간근로수당 :                    원/월                    ④ 휴일근로수당 :                    원/월

⑤ 상여금 :                    원/월                    ⑥ 휴가수당 :                    원/월

① 상기 월급에는 기본급 외 월평균 연장근로수당(52시간), 야간근로수당(10시간), 휴가수당 등이 포함되어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이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갑’은 매년 ‘을’의 임금 책정 시 ‘을’의 근무평가, 근태, 고객서비스 등 제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봉을 결정토록 한다.

### **제5조 [임금지급]**

임금은 매 월 일( )에 지급하되,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급여통장이체를 포함)으로 지급한다.

### **제6조 [손해배상]**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 ‘을’의 근로계약 중도해지를 포함)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갑’의 물품을 훼손 및 도난 시에는 민, 형사적 책임을 진다.

### 제7조 [계약해지]

- ① ‘을’ 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갑’ 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 ② ‘을’ 의 신체조건,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③ ‘을’ 이 ‘갑’ 의 정당한 업무지시 또는 ‘갑’ 의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손실을 끼쳤을 때.

### 제8조 [준수사항]

- ① ‘갑’ 과 ‘을’ 은 본 연봉계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 ②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사 시 최소한 1개월 전에 회사에 사전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 되며, 회사의 승인 전까지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
- ③ ‘을’ 은 근무 시 또는 퇴직 후라도 ‘갑’ 과 관련되는 영업비밀,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수습]

- ①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사용 수습 기간으로 한다. 단, 경력직의 경우는 수습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② 사용기간 중도 또는 만료 시 적성이나 능력, 인간관계를 판단하여 본채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0조 [기타]

본 계약에 의한 기간과 임금 및 기타 금전의 정산이 완료됨으로써 ‘갑’ 과 ‘을’ 공히 본계약의 책임을 면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의거 위와 같이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와의 근로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 ‘갑’ 과 ‘을’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빙기실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 ○○○ (인)      [을] 사무장 ○○○ (인)

# 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 거 창 군 수

### 1. 위탁사업개요

- 사 업 명 : 『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 운영
- 목 적 :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한 효율적인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위탁기간 : 2019. 9.(위탁계약일) ~ 2021. 12. 31.(2년4개월)
- 위탁금액
  - 2019년, 1차 년도 : 80백만원 범위내
  - 2020년 ~ 2021년 : 당해년도 예산 편성액에 의함
  - 2019년 위탁사업비 사업예산 편성기준

구 분	내 용
사 업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 및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li> <li>· 단위사업당 포괄편성 지양, 세부사업까지 과목별로 편성</li> <li>· 단순 행사성, 소모성 경비지출 금지</li> </ul>
인건비 및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위탁금액의 70%한도로 제한</li> <li>· 인건비에 따른 고유업무를 별도로 규정해야함</li> </ul>

\* 사업비는 위탁금 교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조정지급 함

## 2. 위탁사무

-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및 도시재생지원사업의 업무 범위 내 규정사업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분석·평가·연구
3.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만들기 인재 발굴·육성
6.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8.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019년 중점 추진 사무

1. 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조성·운영 및 센터역량강화 교육
2. 마을만들기 관련사업 공모 지원
3. 마을만들기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4. 마을만들기 소식지, 홍보물 제작-배포, 블로그(밴드) 구축, 운영
5.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설명회((전읍면)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완료지구 역량강화 워크숍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 9. 3. ~ 9. 9.(7일간)
- 접수기간 : 2019. 9. 9(월) 09:00~18:00
- 접수장소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진흥담당(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팩스·우편 등 접수 불가)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농업기술센터
  - 연락처 : 농촌진흥담당 ☎ 055-940-8280

#### 4. 신청자격 요건

- 신청자격 : 거창군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규정에 의한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기관·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마을만들기 및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임의단체 제외)

#### 5. 수탁자 선정방법

- 수탁자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신청인은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기관 및 단체의 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할 때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10분, 위원 질의응답 20분으로 진행 하되 심사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인력과 기구,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일시 : 2019. 9월(추후 통보)

#### 6. 제출서류

- ① 위탁운영 신청서 1부 [서식 1]
- ② 사용인감계(법인인감증명서 포함) 1부 [서식 2]
- ③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1부 [서식 3]
- ④ 법인(단체)현황 및 인력구성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등 포함) 1부 [서식 4]
-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최근 1개월이내 소인(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⑥ 법인(단체) 재정현황 증빙자료(재무제표 등) 1부 [서식 5]
- ⑦ 서약서(소정양식) [서식 6]
- ⑧ 선정결과 이행각서 1부 [서식 7]
- ⑨ 최근 3년간 마을만들기 관련 분야 사업실적증명서 (2016~2018년도) 1부 [서식 8]

- ⑩ 자부담 확보액 및 부담방법 제시서
- ⑪ 사업계획서(서식에 맞게 작성) [서식 9]
- ⑫ 평가용 자료(사업내용 위주로 작성, 책자 제작 별도 제출) 10부
- ⑬ 기타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 상기 서류는 순서대로 A4용지 1권으로 일괄 편철하여 10권 제출하시기 바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서식은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www.geochang.go.kr](http://www.geochang.go.kr) )

## 7. 협약의 체결

- 선정된 수탁단체는 거창군과 별도의 협의서에 의해 협약을 체결  
해야 하며,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공증관련 비용은 수탁기관 부담)
- 협약체결 기한 : 2019. 9월 중
- \* 협약체결 기한은 선정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8.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1개 법인·단체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재  
공고 후에도 1개 법인·단체가 신청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70점 이상이어야 함
- 수탁자로 결정된 단체는 지정기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결정통지를  
무효로함. 이 경우 차 순위의 사업신청자와 계약할 수 있음.
- 위탁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 숙지 및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복농촌과로 문의([☎055-940-8280](tel:055-940-8280))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주)삼덕개발 토석채취사업

#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주)삼덕개발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 거 창 군 수

###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주)삼덕개발 토석채취사업
- 위치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97-6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17,229㎡
- 사업기간 : 2019년 ~ 2028년
- 사업시행자 : (주)삼덕개발

### 2.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공고·공람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거창군청 산림과, 웅양면사무소
- 공고문 게시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3.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9.11.(수요일) 11:00~
- 장 소 : 거창군 웅양면사무소 2층 회의실
- 내 용 : (주)삼덕개발 토석채취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설명

### 4. 의견제출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일로 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장소 : 거창군청 산림과, 웅양면사무소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 제출의견 :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와 그 감소 방안 등의 의견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

###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산림과 (☎055-940-34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거창군수

###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창군지부
- 대표자 : 지부장 변현일
- 교섭요구일자 : 2019. 9. 3.

###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19. 9. 10. 18:00한)
- 교섭 요구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출처 : 경남 거창군 행정과 서무담당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Fax : 055-940-3169

###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서무담당(☎055-940-31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16호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지역을 확대하고, 상위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사항이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월 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안 제4조제2호)

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안 제4조제4호)

4. 입법예고기간 : 2019. 9. 4. ~ 2019. 9. 10.(6일간)

##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9. 10.(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부.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항 제2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li> <li>3. 생략</li> <li>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li> </ol> <p>②~③ (생략)</p>	<p>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li> <li>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li> </ol> <p>②~③(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17호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다. 전기자동차 등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 2019. 9. 4. ~ 2019. 9. 10.(6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9. 10.(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등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대기

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되는 자동차는 신규등록된 전기자동차로 함.
  2. 지원금액은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동종 또는 동급차량)의 최종 판매가격의 차액으로 함.
  3.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경비
-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설치·운영
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역 설치
3. 군수는 배터리 지원의 경우 자동차회사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정하여 배터리 교체 가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단, 신청일로부터 거창군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한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5. 24.]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24.]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7. 11. 28.>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2. 5. 23., 2016. 1. 27.>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 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2. 2. 1., 2013. 4. 5.>
-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2. 2. 1., 2013. 4. 5., 2016. 1. 27., 2017. 11. 28.>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부품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 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5., 2016. 12. 27.>
- 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 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5., 2016. 12. 27.>
-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 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2013. 4. 5., 2016. 12. 27.>
- ⑪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 ⑬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 ⑭ 제13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7. 11. 28.>

⑮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2016. 12. 27.>

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6. 12. 27.>

⑰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6. 12. 27.>

##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2. 개정이유
  -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 나.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개발 및 보급 등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4조)
    -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 2) 직업교육 사업
    -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라. 사회복귀 사업비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노력을 정함(안 제5조 ~ 제6조)

4. 입법예고기간 : 2019. 9. 4. ~ 2019. 9. 10.(6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9. 10.(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1부.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보호관찰법)

[시행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